제1부 3장 대회주최자 등록규정	
제4조 신청서류	제4조 신청서류
대회주최자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대회주최자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단체, 기업, 개인은 아래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서류를 준비하여 국제대회는 3개월 전, 국내대회는 2개월 전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1 KARA가 정한 소정의 신청서.	4.1 대회주최자 등록신청서.
제5조 대회주최자의 승인	제5조 대회주최자의 승인
5.1 대회주최자의 승인은 KARA 사무국과 이사 5인 이상 심의 후 과반수	5.1 대회주최자의 승인은 KARA 사무국과 이사 5인 이상 심의 후 과반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5.2 등록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 직접 제출한다.	5.2 등록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 직접 제출한다.
	5.3 KARA로부터 승인 받은 대회주최자의 소유권을 2019년 1월 1일부터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기존 대회주최자 포함).
	5.4 FIA 또는 KARA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